

# 海上保險에서 被保險者의 損害防止 義務違反의 效果에 관한 小考

朴 成 喆\*

---

目 次	
I. 序 論	(1) 積極的 不作爲에 의한 義務違反
II. 損害防止義務의 內容	(2) 消極的 作爲에 의한 義務違反
1. 約款上의 規定과 그 意義	2. 損害防止義務違反의 效果
2. 損害防止義務者	(1) 損害防止義務違反의 性質
3. 損害防止義務의 開始時期	(2) 保險者의 損害賠償 請求權의 限界
4. 損害防止義務의 履行과 損害防止費用	IV. 結 論
III. 損害防止義務違反의 成立과 그 效果	
1. 損害防止義務違反의 成立	

---

## I. 序 論

오늘날 무역의 증진에 있어 海上保險의 역할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海上保險契約을 체결하는 保險契約者나 保險契約上 被保險利益을 갖는 被保險者<sup>1)</sup>는 保險契約者로서 또는 被保險者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保險者와 被保險者 상호간에 분쟁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保險契約은 다른 契約과는 달리 最大善義의 原則과 信義誠實의 原則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契約으로서 이를 위반할 시는 保險契約이 取消될 수 있는 위험하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sup>2)</sup> 무릇

---

\* 慶南大學校 貿易學科 講師.

1) 損害防止義務者로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被保險者, 保險契約者, 代理人, 使用人 등이 있다.

모든 계약에서 당사자들은 반드시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수반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損害保險의 일종인 海上保險에 있어서 保險者는 1) 保險證券의 교부, 2) 保險金의 지불, 3) 保險料의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반면에 被保險者는 계약체결 후에 1) 保險料의 지불, 2) 危險增加事項의 通知, 3) 損害發生의 通知, 4) 損害의 防止 등 積極的인 義務를 부담하게 된다. 특히 被保險者의 의무 중 損害防止義務는 그 비용이 損害補償額과 합산하여 保險金額을 초과한 경우에도 保險者가 부담<sup>3)</sup>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損害防止費用에 관한 해석문제는 保險者와 被保險者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海上保險에 있어서 被保險者의 의무 중에 하나인 損害防止義務違反의 效果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海上保險의 準據法이 되고 있는 영국 海上保險法(Marine Insurance Act 1906: 이하 “MIA 1906”으로 칭함) 및 保險約款을 중심으로 살펴봄과 아울러 우리 나라의 상법과 일본 상법상의 규정을 개관해 보고 몇몇 관련 판례의 검토를 통하여 실무상 적용에 따른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損害防止義務違反을 契約違反(breach of contract)이라는 관점에서 商務的·法理的인 고찰을 해 보고자 한다.

---

2) MIA 제17조: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is a contract based upon the utmost good faith, and if the utmost good faith be not observed by either party, the contract may be avoided by the other party.

3) MIA 1906 제78조 1항에서는 “全損에 대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損害防止條項에 따라서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保險者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 상법 제680조에는 “保險契約者와 被保險者는 손해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保險金額을 초과한 경우라도 保險者가 이를 부담한다.” 그리고 일본 상법 제660조에는 “被保險者는 손해방지를 위한 활동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용 및 填補額이 保險金額을 초과한 때도 保險者가 이것을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II. 損害防止義務의 內容

### 1. 約款上的 規定과 그 意義

損害防止義務는 MIA 1906 제78조 제4항<sup>4)</sup>에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손실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킬 목적으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被保險者 또는 그 代理人의 義務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Lloyd's S.G. Policy의 損害防止約款<sup>5)</sup>에 의하여 保險契約의 內容으로 구현되었으며 S.G. Policy의 損害防止約款을 보완하기 위하여 첨부되는 特約인 舊協會積荷約款 제9조의 受託者約款(bailee clause)<sup>6)</sup>에는 “손해를 방지하고 경감시키기 위해 가능한 조치를 강구하고 운송인이나 수탁자 또는 기타 제3자에 대한 모든 권리가 적절히 보전되고 행사하도록 확실히 하는 것은 被保險者의 義務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82년 개정된 新證券이나 新協會積荷約款(A), (B), (C)에는 損害防止約款이라는 명칭을 가진 것은 없으나 MIA 1906 제78조의 내용과 S.G. Policy의 損害防止義務約款을 합해서 被保險者義務約款(duty of assured clause)이라는 명칭으로 화체되어 新協會積荷約款(A), (B), (C)의 각 제16조<sup>7)</sup>에 “손해의 방지나 경감을 위하여 합리적

4) MIA 1906 제78조 4항: It is the duty of the assured and his agents, in all cases, to take such measures as may be reasonable for the purpose of averting or minimizing a loss.

5) Lloyd's S.G Policy의 손해방지약관(sue and labor clause): ~ in case of any loss or misfortune, it shall be lawful to the assured, their factors, servants and assigns, to sue, labor and travel for in and about the defence, safeguards and recovery of the said goods and merchandises, or any part thereof, without prejudice to this assurance; to the charges whereof the assurers will contribute, each one according to the rate and quantity of his sum herein assured ~.

6) 수탁자약관(bailee clause): It is the duty of the assured and their agents, in all cases, to take such measures as may be reasonable for the purpose of averting or minimising a loss and to ensure that all rights against carriers, bailees or other third parties are properly preserved and exercised.

7) Duty of Assured Clause; 16.It is the duty of assured and their

인 조치를 취하는 것과 운송인이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모든 권리가 정당하게 보존되고 행사되도록 확보하는 것은 被保險者의 의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MIA 1906 제78조의 내용과 S.G. Policy의 損害防止約款, 委付拋棄約款 및 舊船舶約款(ITC-Hulls, 1970)을 합해서 만든 新協會期間(船舶)約款上의 被保險者義務約款(duty of assured clause)인 제13조 1항<sup>8)</sup>에는 “어떤 멸실 또는 불행이 닥친 경우에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되는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被保險者 또는 그의 使用人 및 代理人의 義務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損害防止義務는 保險契約上의 權利·義務로 볼때 상응하는 保險料를 받고 被保險目的物의 안전을 담보한 保險者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保險者는 被保險資產을 직접통제하지 않음으로 위험에 처한 被保險資產의 손실을 방지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위치에 서지 못한다. 따라서 被保險者에게 대신 그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손해액에 따라 保險金을 지급받는 保險者와 保險契約者 및 被保險者 사이의 衡平의 原則과 信義誠實의 原則에 부응하고 또한 결과적으로 손해의 방지는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국민경제적으로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 존재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다.<sup>9)</sup> 즉, 손해

---

servants and agents in respect of loss recoverable hereunder. 16.1. to take such measures as may be reasonable for the purpose of averting or minimising such loss, and 16.2. to ensure that all rights against carriers bailees or other third parties properly preserved and exercised and the Underwriters will, in addition to any loss recoverable hereunder reimburse the assured for any charges properly and reasonably incurred in pursuance of these duties.

- 8) In case of any loss or misfortune it is the duty of the assured and their servants and agents to take such measures as may be reasonable for the purpose of averting or minimising a loss which would be recoverable under this insurance.
- 9) 損害防止義務의 존재근거에 대해서 사회공익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公益說, 被保險者와 保險者의 衡平상 필요하다는 衡平說, 그리고 被保險者와 保險者 사이의 信義誠實의 原則에 따라 필요하다는 信義誠實說 등이 있으나 어느 한가지의 주장으로 만족스럽게 그 존재의의를 설명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즉, 공익의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保險者가 담보한 擔保危險의 損害防止 뿐만 아니라 모든 손해를 방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

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는 일이 가능한데도 보험에 附保되었다는 이유로 被保險者가 이것을 방관한다든지 또는 被保險者가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확대시키는 것과 같은 信義誠實의 原則에 위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保險者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損害防止義務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損害防止義務는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노력하면 충분한 것으로 해석된다<sup>10)</sup>. 이러한 의무는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보험사고의 발생자체를 방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사고 발생의 방지를 요구한다는 것은 보험의 존재의 자체를 부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被保險者 및 保險契約者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衡平에도 맞지 않다.

## 2. 損害防止義務者

MIA 1906에서는 被保險者와 代理人을 損害防止義務者로 규정하고 있으며, 新協會期間(船舶)約款에서는 被保險者와 代理人 및 使用人까지도 損害防止義務者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被保險者와 保險契約者, 그리고 일본 상법에서는 被保險者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독일 보험계약법과 상법에서는 保險契約者(Versicher-

---

며, 衡平의 原理에 따르면 損害防止義務者로 被保險利益을 갖지 않는 保險契約者는 損害防止義務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법에는 保險契約者를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 상법의 해석에서도 적극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保險契約者를 포함한다는 것이 통설이므로(이후의 註 8) 참조) 이것은 衡平의 原則에 따른 설명이 곤란하다. 또한 信義誠實의 原則에 전적으로 따른다면 信義誠實의 原則은 어디까지나 도덕적 기반 위에서 성립하는 것으로 모든 契約法理에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 損害防止義務에 국한된 설명논리는 아니다. 다만 보험계약이 다른 계약과는 달리 射倖性이 높다는 측면에서 더욱 더 강조되는 것이 信義誠實의 原則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損害防止義務의 존재근거를 한가지 확실히 설명하기보다는 信義誠實의 原則과 衡平의 原則에 따라 損害防止義務가 요구되며 결과적으로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국민경제에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法律上義務 또는 契約上債務로 그 존재의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10) 市川久仁, “損害防止義務とその費用”, 『損害保險研究』 第21卷 第3號, 損害保險事業研究所, 1961, p.78.

ungsnehmer)와 被保險者(Versicherte)를 각각 규정하고 있어 동일인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보이며, 스위스 보험계약법에서는 保險金請求權者(Anspruchsberchtigter)로 규정하고 있어 被保險者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법률 및 保險約款上 규정된 損害防止義務者는 被保險者, 保險契約者, 代理人, 使用人이라고 집약해 볼 수 있다.

被保險者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느 국가의 법 또는 保險約款에서도 규정하지 않는 경우를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被保險利益을 갖는 당사자로서 손해방지행위의 유무가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으며 또한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경우에 保險目的物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손해방지 활동에는 가장 최적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sup>11)</sup> 한편 保險契約者는 被保險者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被保險者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또한 보험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라는 측면에서 직접적인 被保險利益을 갖지 않더라도 損害防止義務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 CIF 조건의 경우 무역거래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매매목적물을 附保하거나 창고업자 또는 운송업자가 화주를 위해 附保하는 경우에는 被保險者보다 保險契約者가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하는데 적절한 경우가 많다.<sup>12)</sup> 이렇게 볼때 損害防止義務者로 保險契約者를 규정하지 않은 MIA 1906과 일본 상법의 규정은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 상법 제660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일본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가지 견해<sup>13)</sup>가 있으나 대체로 損害防止義務者로 保險契約者를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입법상 결함으로 지적할 수 있다고 보는 학자<sup>14)</sup>도 있

11) 市川久仁, 前掲論文, p.75.

12) 小町谷操三, 海上保險法總論(二), 東京: 岩波書店, 1954, p.554.

13) 大森, 保險法, p.170; “商法은 被保險者에게만 損害防止義務를 부과시켰지 保險契約者에게는 부과시키지 않았다”라고 주장. 青山, 保險契約法研究, p.276; “商法에서 被保險者만 규정한 것은 입법상 결함”이라고 주장. 今村, 海上損害論, p.222; “商法은 적극적으로 保險契約者를 배제해서 해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 市川久仁, 前掲論文, p.77. 註 5) 参照.

14) 市川久仁, 前掲論文, p.74.

다. 또한 MIA 1906 제78조 4항은 被保險者와 그 代理人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保險契約者는 被保險者의 代理人 입장에 설 수 있기 때문에 保險契約者를 損害防止義務者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代理人이나 使用人은 결국 被保險者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으로 간주할 수 있음으로 損害防止義務를 부담한다는 데 異論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船舶保險의 경우 代理人이라고 하는 개념에 손해방지활동과 관련해서 被保險者(船主)의 명시적인 지시가 없으면 船長과 승무원은 代理人의 개념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판례<sup>15)</sup>가 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MIA 1906 제55조 2항과 제78조 4항 사이에 모순이 발생한다.<sup>16)</sup> 그러나 이것은 新協會期間(船舶)約款에서 使用人(servants)을 損害防止義務者에 포함시키고 있음으로 船主의 使用人인 船長도 損害防止義務者에 포함시키고 있는 新協會期間(船舶)約款의 내용과 상반된다. 따라서 MIA 1906 제55조는 보험사고 발생전에 적용되고 MIA 1906 제78조 4항은 보험사고 발생후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sup>17)</sup> 즉, 선장의 과실 → 보험사고 → 손해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保險者가 보상책임을 지고, 보험사고 → 선장의 과실 → 손해의 확대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保險者는 被保險者에 대해 反對請求를 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船長은 위험상황에 있을 때 船主의 使用人이 될 뿐만 아니라 貨主의 代理人

15) *Astrovlanis Compania Naviera SA v. Linard* (1972) 사건에서 Mocatta 판사는 “선주로부터 지시가 없으면 그러한 도움(구조선에 의한 구조도움)에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 선박의 선장은 MIA 1906 제78조 4항의 대리인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라고 판시하였다.

16) 제78조 2항에서 말하는 代理人의 개념에 船長을 포함시킨다면 제55조 2항의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즉, 제55조 2항에서 保險者는 被保險者의 고의, 불법행위에 기인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保險者는 被保險危險에 近因하여 일어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 船長이나 선원의 불법행위 또는 과실이 없었다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즉 과실이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船長을 被保險者의 代理人으로 해석하면 앞구절과 뒷구절이 모순된다.

17) 梁厚烈, “海上保險契約當事者의 損害防止義務와 費用負擔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請求論文, 全北大學校, 1992. p.123.

이 될 필요성이 있으며 모든 단계에 있어서 손실을 경감하거나 그들 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18) 따라서 船長은 損害防止義務者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 3. 損害防止義務의 開始時期

損害防止義務의 開始時期를 우리 나라 상법이나 일본 상법 등에서 사고의 방지를 규정하지 않고 손해의 방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드시 사고 발생후로 해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확실시되는데도 아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서 사고예방을 위해 행하는 활동을 손해방지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손해의 확대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보험사고의 발생이 확실시되는지의 여부는 사실의 문제(the question of fact)로 남는다. 따라서 被保險者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든 아니든 어떤 사유로 인해서 발생이 확실시되는 保險事故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까지 擴張解釋하는 것이 損害防止義務條項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 勝呂 弘은 損害防止行爲의 적절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보험사고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발생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고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저지까지 확대하여 보고 있으며<sup>19)</sup>, 독일 보험계약법은 보험사고의 발생이 임박했을 때 「bei dem Eintritte des Versicherungsfalls」로 규정하고 있어 보험사고의 발생이 임박했을 때 保險事故의 防止를 위한 노력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損害防止義務의 開始時期를 보험사고의 발생후 뿐만 아니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확실시되는 시점까지 확대해서 보는 것이 信義誠實의 原則에서 볼 때 가장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을 보험사고의 발생방지까지로 너무 확대해석하는

18) R.J. Lambeth, *Templeman on Marine Insurance* (6th ed.), London: Pitman, 1986, p.383.

19) 勝呂 弘, “損害防止について”, 損害保險論選集, 東京: 千倉書房, 1985, p.378.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被保險者는 손해가 거의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필요는 없으며, 다만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재산을 보전하는 조치를 취하면 된다.<sup>20)</sup> 만약에 이에 대하여 被保險者에게 엄격한 證憑을 요구하게 되면 被保險者는 위험상황에 처했을 때 據證의 責任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를 결심해야하는 딜레마에 처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sup>21)</sup>

#### 4. 損害防止義務의 履行과 損害防止費用

損害防止義務는 損害發生擴大의 防止를 의미하며 保險事故의 발생을 防止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損害防止義務는 담보된 손해에 한하며 保險者가 면책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損害防止義務가 성립하지 않는다. 損害防止의 방법으로는 적극적인 억압이나 소극적인 피난의 어느 방법으로 행하여도 좋으며 그러한 방법의 효과의 발생이 반드시 요청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損害防止活動으로 행한 것이 損害防止效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의무의 이행으로 된다. 이러한 점에서 救助行爲나 共同海損行爲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또한 손해방지의 정도는 구체적인 기준은 없으나 그 당시의 사정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하면 충분한 것으로 보며, 被保險者는 被保險目的物이 無保險狀態, 즉 “act as if uninsured”로 가정하고 損害防止와 輕減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sup>22)</sup> 즉, 附保하지 않은 물품이 운송중에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貨主는 필요한 防止對策을 이행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비용을 발생시키되 그 비용은 推定全損金額을 초과하지 않도록 행동할 것으로 여겨진다.<sup>23)</sup> 한편 損害防止

20) R.J. Lambeth, *op. cit.*, p.378.

21) E.R. Hardy Ivamy, *Marine Insurance*, 4th ed., London: Butterworths, 1985, p.446.

22) R.J. Lambeth, *op. cit.*, p.379.

23) R.H. Brown, *Marine Insurance*, Vol. 1, 5th ed., London: Witherby & Co. Ltd., 1986, p.187.

義務의 입법취지를 볼 때, 保險者가 부담하는 손해액을 가능한 한 적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損害防止行爲는 손해의 직접적인 防止行爲뿐만 아니라 1) 殘存物의 保存, 2) 第三者에 대한 代位權, 求償權<sup>24)</sup>의 保存과 같은 間接防止行爲도 포함하는 것으로 연장하여 볼 수 있으며 이는 保險者의 代位權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損害防止義務에 따른 비용으로 損害防止에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sup>25)</sup>을 損害防止費用이라고 하며, 防止義務者가 防止行爲를 하면서 지불한 일체의 財産的 犧牲<sup>26)</sup>으로 金錢의 犧牲뿐만 아니라 노력의 제공, 물품의 희생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으며 廣義의 損害防止義務에 따른 費用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1) 損害防止義務를 直接履行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용,<sup>27)</sup> 2) 제3자에 대한 請求權의 行使 및 保全義務를 위해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용, 3) 訴訟에 대응하여 仲裁에 필요하거나 유익한 訴訟, 仲裁의 費用을 포함한다.<sup>28)</sup> 이러한 損害防止費用의 要件<sup>29)</sup>으로는 첫째, 被保險者 또는 代理人이 합리적으로 지급한 비용에 한하며 제3자에 의하여 지출된 비용은 損害防止費用이 될 수 없다.<sup>30)</sup> 그러나 제3자에 의한 救助行爲가 있는 경우, 그러

24) 李在卜, 積荷保險約款論, 서울: 保險研修院, 1991, p.104; 이러한 의무를 廣義의 損害防止義務로 간주함. 加藤 修, 貿易保險の實務, 東京: 同文館, 1987, p.229; 이와 같은 의무는 특히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seal의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seal의 상태에 이상이 있을 때 현장을 보전하고 운송인과 기타 관계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 피보험자의 의무에 속한다.

25) 우리나라 상법 제680조 참조.

26) 勝呂 弘, 前掲論文, p.374.

27) 우리 나라 상법 제680조 참조; 勝呂 弘, 前掲論文, p.383; 필요 또는 유익한 것의 판단은 지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각 경우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사실의 문제이다. The Pomeranian호 사건 (Lehmann Bros v. Sea Insurance Co., Ltd.) (1895); 어떤 이유에서든 죽음을 포함하는 All Risk 조건으로 생동물이 부보되어 항해 중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선박이 필요한 수선을 하기 위하여 피난항에 억류되었다. 여기서 추가의 사료를 공급함으로써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만약에 이러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 기아에 의해 전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비용은 손해방지를 위해서 유익한 비용으로 S/L 조항하에서 보상받을 수 있었다.

28) 日本船舶保險普通保險約款 第7條 參照.

29) 吳元奭, 海上保險論, 서울: 三英社, 1993, p.375.

30) Dixon v. Whitworth C.A.(1879): 특별히 건조된 운반선이 클레오파트라

한 救助行爲가 被保險者와의 救助契約에 의한 救助라면 그 비용은 損害防止費用이 된다. 둘째, 損害防止費用은 保險者가 보상할 손해를 피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保險者가 보상할 필요가 없는 免責率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비용이 발생했다면 이는 보상될 수 없다. F.W. Berk Co. Ltd. v. Style (1955) 사건<sup>31)</sup>에서 재포장비(rebaggage charges)는 保險者의 擔保危險이 아니라 그 자체의 부적절성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損害防止費用으로 報償받지 못한 것은 좋은 예가 된다. 다만 TLO (Total Loss Only) 조건으로 附保된 경우 그러한 防止活動이 없었다면 全損이 발생할 것인지 또는 단지 分損이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損害防止費用의 回收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이러한 TLO 조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구,<sup>32)</sup> 즉 “but including salvage charges and/or sue and labour charges”를 삽입하여 전손이 발생하든 하지 않든 관계없이 損害防止費用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또한 航海保險에서 단지 被保險目的物의 引渡遲延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은 비록 지연이 擔保危險에 기인한 경우라도 損害防止費用으로 인정될 수 없다.<sup>33)</sup> 셋째, 積荷保險

---

바늘을 신고 이집트에서 영국으로 견인되는 도중에 비스케이만에서 폭풍우를 만나 운반선이 떨어져 나가 타선에 의해 구조되었다. 이러한 구조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회복하려고 했으나 J. Lindley 판사는 제3자에 의한 비용이라는 이유로 기각함.

31) F.W. Berk Co. Ltd. v. Style (1955). Kieselguhr(규조토)가 어떤비율에 관계없이 ALL RISK 조건으로 부보되어 선박의 창고에서 부선으로 이동되던 중 백이 하자가 있어 터졌다. 피보험자가 재포장비용을 청구했으나 J. Seller 판사는 재포장비용은 적하의 원천적인 하자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32) R.J. Lambeth, *op. cit.*, p.381.

33) MIA 1906 제55조 2항(b). Wessberg v. Lamb 사건 (1950)에서 All Risk 조건으로 부보된 가구를 운송한 운송인이 운송도중 손상을 입은 가구에 대해서 운임을 현금지불하지 않으면 인도하지 않겠다고 항의를 했고 피보험자는 가구의 안전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 전체운임을 지불하고 손상은 S/L 비용으로 보험자에게 청구하고자 했으나 A.R. Thomas 판사는 보험자가 책임있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며, 전체운임의 지불은 인도지연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기 때문에 S/L 비용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의 경우 목적지 도착전에 발생한 비용에 한한다. 반면에 목적지 도착 후에 발생한 비용은 特別費用이다. 그러나 損害防止費用이 목적지에서 지출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곡물의 최종목적지가 선박의 하역항 창고이며 擔保危險의 결과 습기가 차서 축축한 상태로 인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곡물이 창고로 입고된 즉시 실시한 건조작업비용은 합리적인 損害防止費用이 된다. 특히 損害防止費用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 상법과 일본 상법에서는 명시적으로 損害防止費用이 保險金額을 초과한 경우에도 保險者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MIA 1906 (제78조 1항)에서 保險者가 全損에 대하여 지불한 경우 또는 보험의 목적이 전부 또는 일정비율미만의 分損不擔保條件으로 담보되었더라도 被保險者는 이 조항에 따라서 정당하게 발생한 모든 비용을 保險者로부터 補償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실무적으로 損害防止條項을 규정하는 保險者의 취지는 保險金負擔을 경감하기 위한데 있다고 볼 때 保險金額을 초과하여 지불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保險價額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保險者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約款을 사용하고 있으나<sup>34)</sup> 이러한 約款의 效力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즉, 상법 및 MIA 1906上的 규정을 強行法으로 해석할 것인지 또는 任意法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따라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損害防止條項이 保險者의 보호를 위한 한 장치라고 볼 때 損害防止費用은 保險加入金額을 한도로 제한된다<sup>35)</sup>고

34) ITC-HULLS 제13조 4항: When expenses are incurred pursuant to this clause 13 the liability under this insurance shall not exceed the the proportion of such expenses that the amount insured hereunder bears to the value of the vessel as stated herein, or to the sound value of the vessel at the time of the occurrence giving rise to the expenditure if the sound value exceeds that value.

35) 吳元奭, 前掲書, p.376. 그러나 保險金額을 한도로 제한하게 되면 被保險者가 損害防止行爲를 하는데 주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주장(加藤有作, 海上損害論, 嚴松堂, 1985, p.79)을 할 수도 있으나 限度金額이 제한없이 허용된다면 保險者에게 衡平上的 문제로 너무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이며, 현실적으로 普通保險約款에 限度金額 제한 규정이 이용되고 있고 또한 외국의 입법예를 보면 독일 보험계약법 제63조 1항에서는 保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被保險者는 損害防止費用의 지출에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합리적인 기준은 保險金額을 고려하여 損害防止活動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Ⅲ. 損害防止義務違反의 成立과 그 效果

#### 1. 損害防止義務違反의 成立

損害防止義務는 被保險者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의무임과 동시에 보험계약상 부담하는 契約上 義務<sup>36)</sup>로서 債務的 性質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契約上 義務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不履行하게 되면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契約違反(breach of contract)을 구성하게 되며 이러한 契約違反을 한 당사자는 타당사자에 대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것이 일반적인 契約法理이다. 被保險者가 이러한 損害防止義務違反을 초래하는 원인은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으나, 대체로 被保險者의 積極的인 不作爲에 의한 履行怠慢(failure to perform), 履行拒絕(refusal to perform), 履行不能(inability to perform)<sup>37)</sup>에 의한 義務違反과 消極的인 作爲에 의한 義務違反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積極的인 不作爲에 의한 義務違反

---

險者の 지시에 따라 지출된 경우에만 保險金額을 초과한 부담을 인정하고 있다.

36) 손해방지 의무에 대해 우리 나라를 비롯한 대륙법에 속하는 국가에서는 손해방지의무를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어 이는 법률상의 의무에 속하고 영국 등 영미법계에 속하는 국가에서는 이를 법률로서 규정하지 않고 다만 보험계약을 보충하는 (supplemently) 것으로 간주되는 보험증권상의 손해방지조항(sue & labour clause)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이는 계약상의 의무에 속한다.

37) A.G. Guest, *Anson's Law of Contract*, 26th ed., Oxford: Clarendon press, 1984, p.471.

① 履行怠慢에 의한 義務違反

履行怠慢은 손해발생 당시에 防止活動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損害防止活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損害防止義務違反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被保險者는 擔保危險에 의한 사고의 발생이 확실시 되거나 또는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즉시 損害防止義務를 이행해야 한다. 즉, 損害防止義務의 이행시기는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시기를 놓쳐서 이행하는 활동은 손해의 방지 및 경감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추가비용의 발생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 被保險者가 損害防止活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는지, 즉 이러한 履行怠慢이 있었는지에 대한 據證責任은 물론 保險者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證憑의 확보는 被保險目的物에 대해 직접통제를 하지 않고 있는 保險者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다만 履行怠慢의 판단기준은 사고가 임박했던 시점 또는 발생시점에 被保險者가 “act as if uninsured”에 준하는 행동을 했는가를 가지고 판단하면 충분할 것이다. 保險者는 어떠한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履行怠慢이 있었다는 것을 證憑할 수만 있다면 契約違反을 주장할 수 있다.

② 履行拒絶에 의한 義務違反

被保險者가 損害防止義務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명백한 契約違反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이러한 損害防止義務를 명시적으로 거절하는 경우는 드물며, 사고발생후 保險者의 損害防止活動指示에 따라 행동하지 않은 被保險者에 대해서는 履行拒絶에 의한 損害防止義務違反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 상법 제652조에는 被保險者에게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 保險者에게 通知義務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57조에는 사고발생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保險者에게 그 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이러한 通知義務를 해태함으로써 손해가 증가하면 그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는 保險者는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Lloyd's S.G. Policy의 蘭外約款 (Marginal

Clause)상에도 損害通知約款<sup>38)</sup>이 포함되어 있으며, 新協會期間(船舶)約款 제10조에도 사고의 通知義務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被保險者는 擔保危險이 증가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면 保險者에게 통지하여 保險者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惟推解析할 수 있다.<sup>39)</sup> 이렇게 保險者가 상황을 직접통제할 수 있을 때 被保險者의 자발적인 損害防止義務는 종료되고 保險者의 지시에 따르기만 하면 義務違反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③ 履行不能에 의한 義務違反

履行不能은 일반적으로 계약성립 당시부터 불능인 原始的 不能(existing impossibility)과 계약성립 이후의 後發的 不能(supervening impossibility)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損害防止義務 違反과 관련한 履行不能은 被保險者의 귀책사유, 즉 被保險者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損害防止活動이 履行不能狀態에 처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화재의 발생가능성이 증가한 사실을 알았으나, 비치해 두었던 포말소화기를 被保險者가 타용도로 사용하고 없었기 때문에 포말소화기로 충분히 화재를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화재의 초동진압이 불가능하여 더 큰 화재가 초래되었다면 被保險者의 歸責事由로 인한 損害防止活動의 履行不能을 초래하여 損害防止義務違反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 (2) 消極的인 作爲에 의한 義務違反

被保險者가 損害發生 당시에 防止 義務를 이행은 했으나 당시의 상

38) 손해통지약관: In the event of loss or damage which may involve a claim under this insurance, immediate notice of such loss or damage should be given to~.

39) 우리 나라 상법에는 손해의 발생시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통지의무만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자의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며, 小町谷操三은 海上保險法總論(二)에서 손해의 방지는 보험자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므로 손해방지자는 보험자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보험자의 이익에 가장 합치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자의 지시를 따라야 할 이유가 없으며 다만 보험자와 상호협약의하에 방지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황에 비추어 損害防止에 유익하거나 필요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방지 활동의 이행이 被保險者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이행되어 損害防止에 기여하지 못함은 물론 오히려 손해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防止行爲는 作爲에 의한 防止義務 違反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은 損害防止費用으로 保險者에게 보상받을 수 없으며 결국 被保險者 자신의 부담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손해 발생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기 때문에 손해발생 이후의 상황변화에 의해 불필요하거나 무익하게 되어도 防止行爲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保險者가 보상한다.

## 2. 損害防止義務違反의 效果

### (1) 損害防止義務違反의 性質

MIA 1906에서나 우리 나라 상법 및 일본 상법에서는 損害防止義務違反의 效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독일 보험계약법 제62조 2항에서는 保險契約者의 고의에 의한 損害防止義務違反이 있는 경우에는 保險者는 保險金의 지급의무를 면하지만 중과실의 경우에는 保險契約者가 損害防止義務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금액의 범위내에서 保險者는 保險金의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규정하여 違反의 효과에 대해서 고의와 중과실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普通保險約款에서 해석의 準據法을 영국법으로 한다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대법원 판례에서 保險契約의 準據法을 영국법으로 한다는 約款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sup>40)</sup> MIA 1906 상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損害防止義務違反의 효과에 대해서 영국의 판례를 검토해 봄으로써 해석의 準據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Astrovlanis Cia. Nav. S.A. v. Linard (No. 2) (1972)* 사건에서 Mocatta 판사는 損害防止義務違反은 保險者에게 防禦權(right of defense)을 주기보다는 反對請求權(right to counterclaim)을 부여한다

40) 서울고법 판결 1980. 8. 19. 사건번호 77나 340.



고 판시하고 있다.<sup>41)</sup> 또한 Ivamy는 損害防止條項하에서 損害防止義務違反을 한 被保險者가 받는 모든 불리한 결과를 확실히는 언급할 수 없으나 그러한 의무의 이행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되어진다면 손실에 대한 保險金請求權이 거절된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고 피력하고 있다.<sup>42)</sup> 그러나 이러한 MIA 1906 제78조 4항상의 義務違反의 효과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통일된 의견이 없어 불확실하며,<sup>43)</sup> 다만 反對請求의 救濟方法이 위의 판례에서 나와 있으며, 어떤 경우<sup>44)</sup>에는 그러한 위반이 保險者에게 保險金請求에 대한 抗辯權(defense to the claim)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sup>45)</sup>

그런데 被保險者의 損害防止義務 즉, 被保險者가 擔保損失을 방지하거나 경감하는데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條件(condition)을 구성한다.<sup>46)</sup> 保險契約 내용에서 條件(condition)은 根本的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으로<sup>47)</sup> 이러한 條件의 違反(breach of condition)의 경우에는 損害賠償請求외에 다른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보기<sup>48)</sup> 때문에 이러한 근거를 배경으로 향후에도 유사사례가 발생시 損害賠償의 請求

41) 주 10)에서 인용한 사례와 동일한 사례의 판례임.

42) E.R. Hardy Ivamy, *op. cit.*, p.450.

43) M.J. Mustill & C.B. Gillman, *Arnould's Law of Marine Insurance and Average*, Vol II, 16th ed., London: Stevens & sons, 1981, p.770.

44) 전손담보조건에서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했다면 분손이 될것이 확실한 경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전손이 발생했다면 보험자는 보험금청구에 대해서 계약위반으로 방어할 수 있다.

45) M.J. Mustill & C.B. Gillman, *op. cit.*, p.770.

46) R.H. Brown, *op. cit.*, p.188.

47)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서는 계약의 위반(breach of contract) 중 조건의 위반(breach of condition)은 계약내용의 근본적(fundamental)인 것의 위반으로 계약을 소멸시키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담보의 위반(breach of warranty)은 근본적이 아닌 것의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다. 그러나 보험계약에서는 그 반대로 조건의 위반(breach of condition)은 근본적이 아닌 것(not fundamental)을 의미하고 담보의 위반(breach of warranty)은 근본적인 것으로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손해방지의무의 위반에 대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논거를 이러한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48) D.C. Jess, *The Insurance of Commercial Risks: Law and Practice*, London: Butterworths, 1986, p.21.

가 가능하다는 범주를 넘지 않는 판례가 성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契約上債務의 不履行<sup>49)</sup>이라는 일반적인 원칙에 비추어 봐도 그러한 의무를 不履行함으로 인하여 증가된 손해를 義務違反者인 被保險者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인다.

## (2) 保險者의 損害賠償請求權의 限界

두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 첫째는 현실적으로 義務違反으로 인하여 증가된 손해가 保險金額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保險者는 지급할 保險金에서 공제하고 지불하면 된다. 둘째의 경우는 증가된 손해가 保險金額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초과된 부분을 누가 부담하는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으나 保險者는 保險金의 지급분과 損害賠償金을 상계함으로써 保險金給付責任을 면하게 되고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義務違反의 책임이 있는 被保險者 자신이 부담해야 된다는 데는 異論이 있을 수 없다. 즉, 保險者는 保險金額 범위내에서 被保險目的物에 대한 책임을 지므로 保險金支給義務만 면하고 나면 더 이상 이해관계를 갖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保險者의 損害賠償請求金額의 범위는 마땅히 保險金額을 限度로 한다고 본다. 또한 만약에 義務違反 사실을 모르고 保險金을 지불했다면 不當利得請求 訴訟에 의하여 회복이 가능하다.<sup>50)</sup> 그리고 義務違反의 사실과 保險者가 입은 손해의 금액과 相當因果關係에 대한 據證責任은 수익을 얻고자 의도하는 保險者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여진다.

49) 小町谷操三, “損害防止義務について(二)”, 『損害保險研究』 第13卷 第1號, 損害保險事業研究所, 1952; 손해배상 채무의 발생을 채무불이행에서 구하고 있다.

50) 市川久仁, 前掲論文, p.83.

## IV. 結 論

지금까지 被保險者의 損害防止義務의 내용과 그 義務違反의 成立 및 義務違反의 효과에 대해서 MIA 1906 및 保險約款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被保險者는 물품이나 선박이 火災로 인하여 손해를 방지하거나 감소시키는데 소홀히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附保되지 않았을 때보다 附保되었을 때 그의 재산의 안전유지에 대한 책임감을 덜 느끼게 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따라서 완벽하게 “act as if uninsured”로 행동할 것이라고는 사실상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被保險者는 信義誠實의 原則에 따라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기만 하면 損害防止義務를 다한 것으로 간주되어 義務違反이 성립되지 않는다. 만약에 이러한 損害防止活動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契約違反으로 保險者가 주장하려면 被保險者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履行怠慢, 履行拒絶 또는 履行不能이 있었다는 것을 證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損害防止義務의 違反은 契約內容上 條件의 違反을 구성하기 때문에 契約은 소멸시킬 수 없으나 損害賠償은 請求할 수 있다고 여겨지나 상황에 따라서 義務違反의 내용이 重要하고 根本的인 違反이 성립되는 경우 契約이 解除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保險者의 保險金全額給付免除를 초래할 수 있다. 물론 무엇이 重要하고 根本的인 違反인가는 事實의 問題로 여겨진다. 특히 MIA 1906 및 우리 나라 상법과 일본 상법에서 保險者가 부담하는 損害防止費用의 범위를 保險金額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보상한다는 취지를 규정함으로써 실무적으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損害防止 규정의 입법취지상 실무적으로 保險金額을 초과하면서까지 너무 적극적으로 損害防止活動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sup>51)</sup> 따라서 이러한 법 조항내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

51) 특히 전부보험의 경우는 더욱 더 그러하며, 일부보험의 경우는 나머지에

정함과 아울러 이러한 義務違反의 效果에 대한 규정도 신설해야 실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參考文獻

- 金政秀, 海上保險論, 서울: 博英社, 1992.
- 吳元奭, 海上保險論, 서울: 三英社, 1992.
- 李殷燮, 海上保險論, 서울: 新英社, 1992.
- 李在卜, 積荷保險約款論, 서울: 保險監督院, 1991.
- 梁厚烈, “海上保險當事者의 損害防止義務와 費用負擔에 관한 研究”, 全北大學校 博士學位請求論文, 1992.
- 錢昌源, 貿易保險實質, 서울: 日新社, 1991.
- 加藤 修, 貿易保險の實務, 東京: 同文館, 1987.
- 小町谷操三, 損害保險總論(二), 東京: 岩波書店, 1954.
- 小町谷操三, “損害防止義務について(一)(二)”, 『損害保險研究』 第12卷 4號, 第13卷 1號, 損害保險事業研究所, 1952.
- 勝呂 弘, “損害防止義務について”, 損害保險論選集, 東京: 千倉書房, 1985.
- 市川久仁, 損害防止義務とその費用, 損害保險研究 第21卷 3號, 損害保險事業研究所, 1961.
- Brice, G., *Maritime Law of Salvage*, London: Stevens & Son, 1983.
- Brown, R.H., *Dictionary of Marine Insurance Terms and Clauses*, London: Witherby & Co. Ltd., 1989.
- Brown, R.H., *Marine Insurance Vol. 1*, 5th ed., London: Witherby & Co. Ltd., 1986.

---

대해서는 자기보험으로 간주할 수 있음으로 일부보험금액과 자기보험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의 비용으로는 방지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 Guest, A.G., *Anson's Law of Contract*, 26th ed., Oxford: Clarendon press, 1984.
- Ivamy, E.R. Hardy, *Marine Insurance*, 4th ed., London: Butterworths, 1985.
- Jess, D.C., *The Insurance of Commercial Risks: Law and Practice*, London: Butterworths, 1986.
- Lambeth, R.J., *Templeman on Marine Insurance*, 6th ed., London: Pitman, 1986.
- Mustill, M.J. & Gilman, C.B., *Arnould's Law of Marine Insurance and Average, Vol. 1, 2*, London: Stevens & Son, 1981.